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(아이) 사랑해 적금』 특약(구 외환은행)
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
4. 주요 변경내용 : 약관명에 구행명 삭제, 조항명 변경, 행명 변경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『(아이) 사랑해 적금』 특약(구 외환은행)	**『(아이) 사랑해 적금』 특약(구 외환은행)**	
제 1 조 약관의 적용 (아이) 사랑해 적금(구 외환은행, 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적립식예금 약관(구 외환은행), 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외환은행)을 적용합니다.	**제 1 조 적용범위** "(아이) 사랑해 적금(구 외환은행, 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"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적립식예금 약관』 및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을 적용합니다.	조항명 변경 구행명 삭제
제 2 조 ~제 7 조 (생략)	**제 2 조 ~제 7 조** (좌동)	
제 8 조 우대금리 ①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, 최대 연1.0%의 우대금리를 제7조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. (우대항목) - 가족사랑 우대(최대 연0.6%) 이 적금 가입시 대표가족으로 등록한 가족(1인)의 실적이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0.6% (항목당 연0.2%) ① (생략) ② 적금 가입월 포함 8개월이내 대표가족 명의 (구)외환은행 요구불 계좌를 통한 연금 입금 또는 건당 50만원이상의 급여입금 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(연금종류 - 생략) ③ 적금 가입월 포함 8개월이내 대표가족 명의 (구)외환은행 요구불 계좌를 통한 하나카드(신용/체크) 결제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④ (생략) - 아이사랑 우대(최대 연0.4%) (생략) ② (생략)	**제 8 조 우대금리** ①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, 최대 연1.0%의 우대금리를 제7조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. (우대항목) - 가족사랑 우대(최대 연0.6%) 이 적금 가입시 대표가족으로 등록한 가족(1인)의 실적이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0.6% (항목당 연0.2%) ① (좌동) ② 적금 가입월 포함 8개월이내 대표가족 명의 KEB하나은행 요구불 계좌를 통한 연금 입금 또는 건당 50만원이상의 급여입금 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(연금종류 - 생략) ③ 적금 가입월 포함 8개월이내 대표가족 명의 KEB하나은행 요구불 계좌를 통한 하나카드(신용/체크) 결제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④ (좌동) - 아이사랑 우대(최대 연0.4%) (좌동) ② (좌동)	행명 변경 행명 변경
제 9 조 ~ 제 10 조 (생략)	**제 9 조 ~ 제 10 조** (좌동)	